학 생 포 상 규 정

북일고등학교

제1조: 본 규정은 본교의 포상, 표창 대상자를 투명하게 선발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의 추천은 담임 또는 교과, 특별활동 담당교사 및 관련 부서장이 할 수 있다. 추천 시 증빙자료 및 공적사항을 별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장상과 졸업시상은 교칙에 의해 당해 학년도에 징계 사실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포상 구분

가. 교내상: 학생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시행한다.(단, 부서업무와 관련한 시상은 담임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 포상의 종류는 학업상, 학교장상, 근태상, 졸업생 시상 등으로 한다.

제6조: 학업상

가. 교과 우수상

1) 학기말에 이수과목 인원의 각 과목별 상위 1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시상한다. 진로선택과목 등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의 경우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석차순으로 석차등급으로 환산하여 1등급 이내(수강자 수의 4%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시상한다.

2) 동석차의 경우에는 모두 시상한다.

3) 여러 과목을 동시에 수상하는 경우 과목 병기하여 1회 수상으로 한다.

나. 각종 교내 경시대회상: 교과별로 계획한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에게 시상하며, 등급 및 등위는 금상(1위), 은상(2위), 동상(3위)로 정한다.

제7조: 학교장상

학생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학기말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인정 결석 3일 미만인 학생으로 한다.

가. 선행부문

1) 교내외 생활에서 투철한 선행 사항으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학생

2) 위경에 처한 노약자, 병약자, 부상자를 보호 조치한 학생
3) 불우한 학우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학생
4) 타인의 범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 또는 방지한 학생
5) 위 항 이외에도 선행 사실이 뚜렷한 학생

나. 공로부문
1) 대외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학생(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주관·후원한 광역시·도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단, 교육기관은 교육부 소속기관과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의 '참고자료5'에 기재된 기관에 한함)
2)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기숙사 학사장으로 활동한 학생

다. 효행부문
1)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뚜렷한 효행을 실천한 학생으로 교내외의 추천을 받은 학생

라. 봉사부문
1) 학생회 차장급 이상 임원 및 기숙사 부학사장으로 교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
2) 학급의 반장을 1학기 이상 역임한 학생
3) 기타 교내외 봉사활동이 현저하여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학생(학급당 환경지킴이 2명, 그 외 특별실 청소 등 창체활동지원부에서 추천)

마. 올해의 학생상
1, 2학년 학생 가운데 1년간 학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여 모든 학우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학생으로 학년부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8조: 근태 수상은 다음 각 항으로 구분 시상한다.
가. 3년 개근상: 3개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한 번도 없는 학생
나. 3년 정근상: 3개년 간 결석 없이 지각, 결과, 조퇴를 합하여 3회 미만인 학생
다. 전입 학생은 전 재적교와 본교에서의 출석일수가 다르더라도 결석, 지각, 조퇴, 결과에 따라 근태수상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 졸업생 시상(3학년부에서 심의 후, 평가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이사장상과 북일인재상은 3학년부에서 5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 추천 자료를 토대로 임시 학생포상위원회(교감, 교무부장, 3학년부장, 안전생활부장)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한다.

가. 이사장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본교의 교육이념(교훈)과 이사장의 덕목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나. 북일인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북일고등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 교육감상, 동창회장상 등 대외상: 우리 학교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한, 3학년 1, 2학기 합산 성적인 학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대학입시 결과를 고려, 별도 규정을 정해 시상한다.

라. 기타 대외상: 시상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선정(추천)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 추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학년부의 협의에 의해 선발.추천.시상한다.

마. 학업 우수상: 우리 학교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한 3학년 1, 2학기 성적을 합산하여 11%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 수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없는 시상은 필요에 따라 각종 대회에서 얻은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이 시상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별도 규정 - 졸업식 수상 순서(변경될 수 있음)

2023학년도 졸업식 수상 순서 (2024.02.)		
수상순서	**상격**	**비고**
1	이사장상	* 1명(후보 추천자 중 1위) 재단 제공 부상
2	북일인재상	* 2명(후보 추천자 중 2,3위) 재단 제공 부상
3	교육감상	
4	동창회장상	
5	도지사 표창	
6	천안시장 표창	
7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표창	
8	학교운영위원장상	
9	국회의원 표창(천안 갑)	2명
10	국회의원 표창(천안 을)	2명
11	국회의원 표창(천안 병)	2명
12	충남도의장상	
13	천안시의장상	
14	충청남도 도의회의원 표창	
15	천안시의원 표창	
16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상	
17	충남 사립중고교장회 회장상	
18	한국사립초중고 법인 충남 회장상	
19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회장상	
20	충남고등학교장회 회장상	
21	충남 교총회장상	
22	천안시 교총회장상	
23	천안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상	
관련자 추천		
	육군참모총장표창	
	우리은행	